일시 | 2019. 3. 29. 금. 오후 2시 장소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주최 | 법무법인 디라이트 · 사단법인 녹색연합 주관 | 사단법인 녹색연합

후원 | 법무법인 디라이트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 ~ 14:05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14:05 ~ 14:15	인 사 말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14:15 ~ 15:15	발 표 (각 30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빈용기보증금 정책 여수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기획홍보팀장) EU 재사용 규정 개정을 통해 본 한국의 재사용법제개선방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15:15 ~ 16:05	지정토론 (각 10분)	작장 Ⅱ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장) 어용선 (서울시 폐기물정책팀장) 정규호 (한살림 정책기획본부장)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배선영 (녹색연합 활동가)			
16:05 ~ 16:30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글 순서

발제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빈용기보증금 정책	7
여수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기획홍보팀장)	
발표 2 EU 재사용 규정 개정을 통해 본 한국의 재사용 법제 개선 방향	21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지정토론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장)	33
어용선 (서울시 폐기물정책팀장)	39
정규호 (한살림연합 정책기 획본부 장)	43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49
배선영 (녹색연합 활동가)	59

발제 1 <u>EPR 제도와 빈용기보증금 정책</u>

여수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기획홍보팀장

생산자책임재활용(EPR)과 보증금제도

2019. 3.29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여수호

1.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

생산단계

재활용지정사업자(제지-52개소, 제병-13개소, 철강-12개소 업체에 재활용 의무 부여) 포장재 재질구조기준준수

(색상,라벨의분리성,마개 등 재질에 따라 1~3등급, 미이행시 10억 미만 과징금 부과)

배출단계

"배출단계부터 재생가능한 자원을 분리

포 강 개 개 질 별 개 활 용 표시 부 착 (EPR 품 목 은 개 질 표시 의 무화) 분 리 배 출 (생활 쓰레기 - 종 량 제 봉투 에 배출 하 며 유료, 제 활 용 품 - 무료)



회수 재활용 단계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부담금 부과(연간 약 1,360억원)
- 살충제, 부동액, 껌, 1회용 귀저기, 플라스틱(바구니, 단열재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캔, 페트등 포장재, 타이어 전지 등 제품 등 총 43개 품목
- 연간 제조, 수입량의 일벙비율을 의무적으로 회수 재활용

2. 폐기물부담금 제도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부과, 연간 1,360억 규모이며, 확보된 재원은 국가폐기물처리예산으로 활용

품목	4	부과기준	요율 및 금액기준	
으로게 하 수유리		◇ 플라스틱 용기 : 500ml 이하 / 500ml 초과 ◇ 유 리 병 : 500ml 이하 / 500ml 초과 ◇ 금 속 캔 : 500ml 이하 / 500ml 초과	개당 24,9원/ 30,7원 개당 56,2원/ 84,3원 개당 53,9원/ 78,2원	
부동	액	1당	189,8원	
꼄		판매가(수입가)	1,8%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담배		20개비당 (전자담배의 경우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	24.4원	
#7 A E	일반	플라스틱 계품(바구니, 장난감, 농업용 필름 등)	합성수지 투입무게(kg) 당 150원	
플라스틱	건축용	건축용 플라스틱 자재(플라스틱관 및 단열재 등)	합성수지 투입무게(kg) 당 75원	

2. 폐기물부담금 제도

부담금항목가운데플라스틱제품은환경부-생산자간자 발적협약체결(17개품목, 760개업체) 일정비율재활용시부담금감면

자발적협약을통해민간차원의재활용체계구축 안정적구축이후해당품목을 다 보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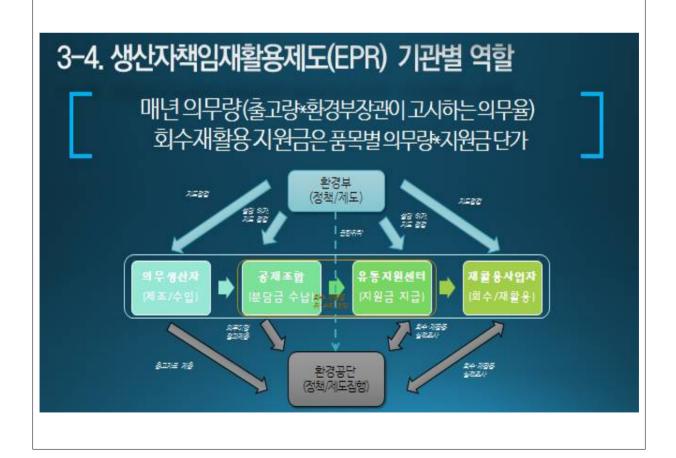


3-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

포장재,제품,전자제품 등 3개분류에 43개 품목 유통센터는 포장재 4개 품목(금속캔,유리병,종이팩,합성수지) 관리

구분	대상품목	근거법률
포장재(4종)	금속캔·유리병·종이팩·합성수지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품(12종)	타이어, 윤활유, 수은전지, 산화온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형광등, 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용필름	
전사제품(27종)	TV,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휴대폰, 오디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자동판매기, 전기정수기, 전기오본,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 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전기·전자체품및자동차 의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무율

장기재활용목표율

◈ 5년 단위로 품목별 생산량, 재활용 여건, 의무달성 현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재활용 목표를 설정·고시

연간 재활용의무율

- ◈ 연간 총 판매·수입량에 일정비율만큼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율 설정·고시
- ◈ 재활용의무를 미달할 경우 부과금 이외 2년 후 의무량이 더 커지도록설계

재활용 의무율 =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 (장기 재활용목표율 - 전전년도 재활용률) X (0,2~1) + 조정계수

-0.61

※ 전기·전자제품의경우생산부터 폐기까지주기가길어 일정비율방식이 아닌 인구 1인당 무게로 장기 재활용목표, 연간 재활용의무량을 설정

장기재활용목표(2018) 6.0kg/인, 2017년 5.4kg/인

3-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부과금

부과대상

◈ 재활용실적 확인결과, 재활용의무량을 미이행한 개활등으로 등산하고

개활동사업공제조합(법 제19조)

산출기준

◆ 재활용부가금 = 개활용기본+용(원/kg) x개활용인휴기(1번원/kg) + 개산원

※ 개환용의무량 미이행률에 따라 가신비를 차통(15~30%)

부과 및납부

- ◈ 납부된 개활용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 ※■사용으로 귀속
- ◈국가재활용시설설치등 개월를 불점요 불료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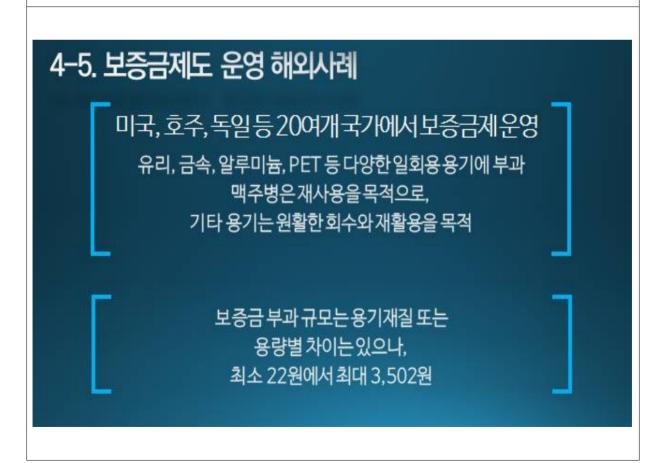












4-5. 보증금제도와 EPR의 비교

구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보증금(재사용유리병)
재활용의무율	매년 변경(75~79%)	80%(재사용+파손병재활용)
규제기준	일정 규모이상 의무생산자	의무생산자가 선택
회수주체	회수업체 또는 지자체	소비자(도소매상)
대상품목	포장재 및 제품 등 3개분야 43개제품	재사용이 가능한 소주, 맥주 및 청량음료
제조사 비용	재활용분담금(→조합)	취급수수료(도소매상) 및 세척비용
제조사편익	없음	신규 유리병 구입비용 절감

5-1. 일회용컵 제도개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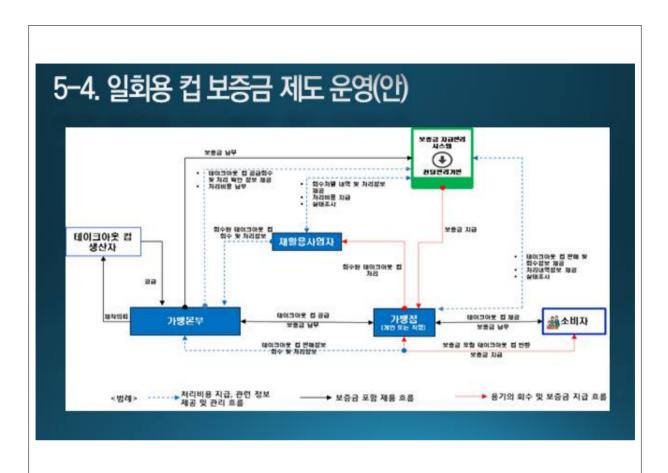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18.5.10,정부합동) 일회용품사용억제및 일회용컵보증금제도입등의추진계획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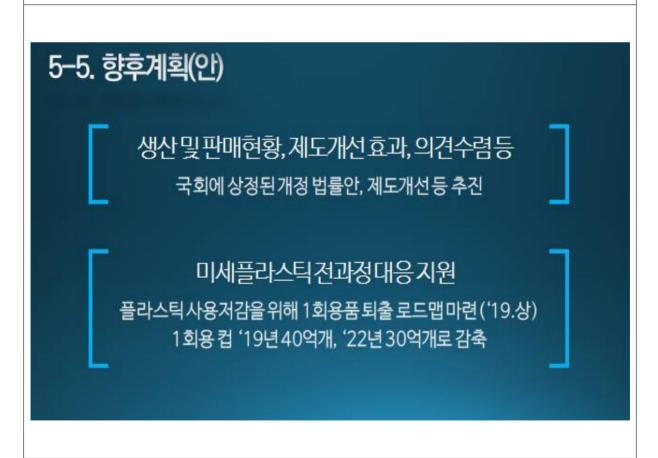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보증금 전담관리센터 신설 등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상정('18.4.20, 문진국의원 대표발의)

* 보증금 적용대상에 일회용 컵 추가(개정), 처리지원금 지급(신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신설)

5-2. 국내 일회용 컵 사용현황 커피, 음료등 판매업소약 137천개소 연간 62억개(68천톤) 사용, 재활용률은 8%내외에 불과 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딱 136,831 79,943 26,957 29,931

5-3. 과거 운영사례 및 개선방안 2002-2008년까지 자발적협약사업장에서 자체운영 2008년 법적근거 미약, 규제타파등을 이유로폐지 구분 (종전) (개선) 법적근거 ■자발적 협약(법적근거 미비) •법적근거 마련(자원재활용법 개정) 관리방식 **●판매자별자체관리** ■온라인을 통한 통합실시관관리 회수체계 ■동일 매장별 반환에 따른 낮은 회수율(37%) ■**동일 브랜드별통합 반환체계** 구축으로 회수율 제고 미반환보증금 관리 *미반환보증금 관리투명성 부족(자사 •미반환보증금을 제3의 공공기관관리 (공공 판매제품제작, 문화홍보행사동사용) 수거체계 확충, 재활용 촉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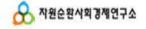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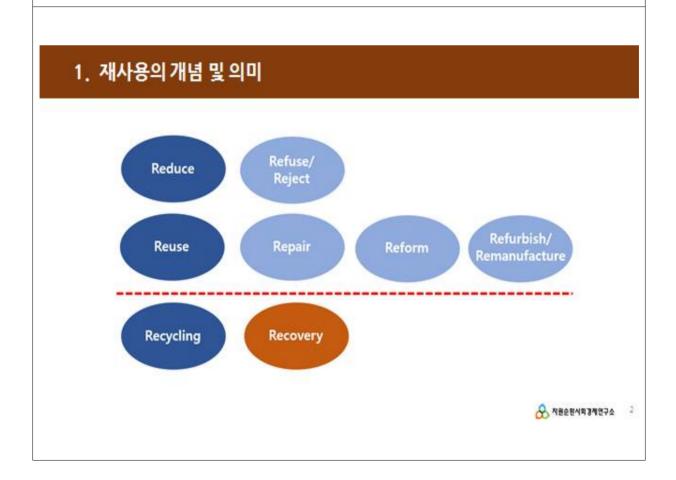


발제 2 EU 재사용 규정 개정을 통해 본 한국의 재사용 법제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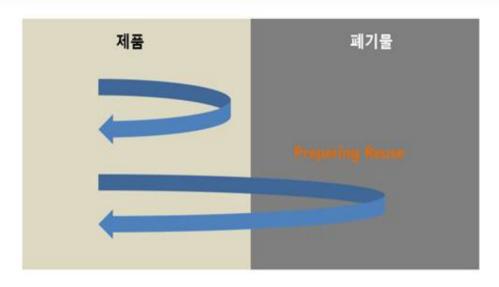
<mark>홍수열</mark>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EU 재사용 규정 개정을 통해 본 한국의 재사용 법제 개선 방향 2019.3.29.





1. 재사용의 개념 및 의미



☆ 적원순원사회경제연구소 3

1. 재사용의 개념 및 의미

- · 의류, 잡화, 도시, 가전 가구, 유이용품 등 중고물품은 판매
- 수리 및 수선 등 제품의 수명연장 서비스 를 제공
- 분해. 세척 등의 공정은 거쳐 중고문품 (부품) 기능 업그레이드
- · 생산자 주도 포장재 재사용(유리병 페트 병
- · 유통·소비자주도 포장재 재시용 (벌크 매장. 다회용컵 제공 등)



• 영리추구형(명품, 구제가게, 민간재활용센터), 공익 추구형(사회적경제, 복지기관, 교환운동 비영리기 관 등), 혼합형이 있음



• 의류 및 가방 등 수선가게, 가전제품 수리(생산자 A/S센터, 민간사업자), 우산수리 등 공공서비스



• 자동차부품, 카트리지 등 재제조산업,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리퍼비시 산업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 제도를 활용한 판매점 반환 및 세척, 재사용



일회용 포장재 및 일회용품을 대체하기 위한 유통 매장의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 소비자 재사용용기 사용



2. 해외 재사용 관련 동향



Provision	Assessment	Summary across products
Non-destructive disassembly		Manufacturers must ensure appliances can be easily disassembled and key components replaced with readily available tools.
Availability of spare parts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provide spare parts when key components fall. However, most parts will only be made available to professional repairers.
Access to repair manuals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make repair manuals available, but only to professional repairers.
Delivery time for spare parts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deliver spare parts within 15 working days for all products concerned.

EU 수리권 보장 규제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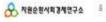


2. 해외 재사용 관련 동향

EU 포장재지침 개정(2018년 5월 30일)에 따른 용기 재사용 규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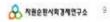
- 1. EU 회원국은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중 재사용가능한 포장재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안전 및 식품위생을 충족시키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 여야 하며, 해당 대책은 아래의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음
 - a. 보증금 체계 활용
 - b. 양적 목표 혹은 질적 목표 설정
 - c. 경제적 유인제도 활용
 - d. 각 포장재 종류별 매년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중 재사용가능 포장재의 최소 비율 설정
- 2. EU 회원국은 제6조의 2030년까지의 포장재 재활용 목표율에 포장재 출고 3년 전에 미리 재사용가능한 포장 재 혹은 재사용된 포장재의 평균 사용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음
 - a. 시장에 출고된 재사용가능한 포장재의 비율을 목표율 (2025년, 2030년 포장재 전체 재활용 목표율) 에서 차감
 - b. 포장재 종류별 목표율(2025년, 2030년 포장재 종류별 목표율)에서 차감

※ 각각의 목표을 조정에서 최소 5%의 재사용 비율이 고려되어야 함



EU 포장재지침 개정(2018년 5월 30일)에 따른 용기 재사용 규정 강화

구분	포장재	플라스틱	목재	철	알루미늄	유리	종이
2025	65%	50%	25%	70%	50%	70%	75%
2030	70%	55%	30%	80%	60%	75%	85%



2. 해외 재사용 관련 동향



<독일 베를린 오리기널 운페어팍트>



- 2014년 개장하였으며 패키지 프리, 리사이클 링 컨셉
- 밀레나 글림보프스키(Milena Glimbovski)와 자라 울프(Sara Wolf)가 공동으로 창립
- 베를린 중소기업 진흥원 창업 경연대회 수상 후 클라우드 펀딩 진행



2. 해외 재사용 관련 동향

<슬로베니아 에코테라 (Ecoter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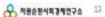
- 2016년 1월 개장하였으며, 용기를 직접 가져와 필요한 만큼 세제를 담아가는 탭드럭 스토어
- 유럽연합 내에서는 화장품의 안정성을 인증하 는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규제에 따라 제품의 성분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현지어 라벨로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에코테라에서는 고객이 빈 통을 가 지고 와서 제품을 담으면 그 제품의 스티커를 용기에 붙여주고 있음



<체코 미와 (MIWA)>



- 페트르 바카(Petr Baca) 포장재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처음 구상
- 재사용 가능한 모듈화된 캡슐 이용, 생산에 서 유통 및 판매가 끝난 빈 캡슐을 회수 후 세척 사용



2. 해외 재사용 관련 동향

< 독일 프라이부르크컵)>



















- 프라이부르크 시장 디에터 살로몬 (Dieter Salomon) 2016년 유럽 폐기물 감량 주간 공기업 ASF 주도로 캠페인 진행
- 1유로 보증금을 부과한 재사용 컵 (뚜껑은 1회용)
- 처음 15개에서 2개월 후 60개의 카페 참여, 현재는 105개 카 페 참여 (60~70% 점유율)
- 26,000개 컵 공급, 15% 미반환
- 참여 매장은 세척의 의무가 있음



< 영국 컵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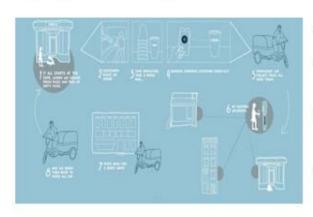


- 2018년 런던에서 시작
- 회원매장 재사용컵 제공 및 세척서비스
- 테이크 아웃 컵 수거 및 재사용
- 컵 뚜껑 RFID칩 내장



2. 해외 재사용 관련 동향

< 미국 베셀웍스(Vesselworks>



- 콜로라도주 볼더시 소재 텀블러 공유회사
- 텀블러 인쇄된 QR코드 앱으로 인식 및 테이크아웃
- 5일 이내 계약된 카페 혹은 키오스크 반납, 수거, 세척, 재공급 시스템
- 5일 이내 미반납 시 한 개당 15달러 자동 결제



3. 국내 재사용 개선 방안

1) 재사용 지원 확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지자체로 하여금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
- 해당 조항을 재사용 관련 활동 및 지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활용센터의 명칭이 포괄적이며 기타 재활용 관련 시설(재활용품 선별장, 폐가전재활용사업장)의 용어와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어의 변경이 필요함 ⇒ 재사용 센터
- 나눔장터, 수리수선문화 사업, 벌크판매매장 등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 록 명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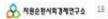
3. 국내 재사용 개선 방안

2) 컵보증금제 도입

- 일회용컵보증금제를 도입하여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다회용컵의 사용확대 자극 필요
- 일회용컵보증금제 관리인프라를 기반으로 매장 내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프로그램이 가능한 지역 (대학,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프로그램 실시

3) EPR 및 빈용기보증금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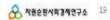
■ 용기재사용 목표제 검토 필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



3. 국내 재사용 개선 방안

4) 샴푸, 세제 등에 대한 벌크매장 확대

- 화장품관리법의 소분판매 가능을 위해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관련 기준 완화 및 정비 필요
-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의무고용, 용기표시 의무, 소비자가 리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기준 등 정비
- 디스펜서 용기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매뉴얼 필요



감사합니다.

<u> 지정토론</u>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장

〈토론문〉

이소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장

- 2018년 4월 발생한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 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함
- 국내 발생 **생활폐기물 중 약 30% 이상이 포장폐기물***이며, 이에 적극적인 감량 정책 이 필요함
 - *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량기준 34%, 부피기준 50%를 차지함('10, 연세대)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용기의 재사용과 벌크화(리필 활성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사용 가능품 이용 활성화),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 재의 재사용 활성화 등 대책이 있음
- 해외 사례에서의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정책수단으로는 **규제(사용금지), 경제적 수 단(공급자/판매자/사용자 부담금), 혹은 규제와 경제적 수단의 혼합 정책** 등이 있음
- 미국은 국가차원의 규제정책은 없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용금지 규제(시애틀, 뉴욕, 오스틴), 경제적 수단(시카고, 워싱턴), 혼합정책(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의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용금지 규제)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의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회용품 중 플라스틱 소재는 컵·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봉투, 비닐 식탁보 등이 있음
-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 및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 행규칙 [별표 2]에서는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음
- (단계적 규제도입) 규제대상 1회용품 추가(빨대, 스틱 등) 방안, 1회용컵 규제확대 등
- (기존규제 강화) 프랜차이즈 및 규모가 큰 매장 위주의 선택과 집중 관리, 단계적 확 산 및 안정화 등
- (경제적 수단)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은 현재 EPR과 폐기물 부담금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포장용기 구입비용(보증금)을 전가하거나, 포장용기 미사용시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
- 해외의 경우 판매자가 1회용 비닐봉투 구매시 부과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구매비용을 전가하지 않음

- 소비자가 1회용 유상봉투 구매(제과업계 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같은 프 렌차이즈에서도 판매점에 따라 유상봉투 가격이 다름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시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1회용컵 보증금제의 목적이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특정 지역(관광지역 등에서 해양환경 유출 방지)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회용컵 보증금제의 목적이 사용 감량이라면 **소비자에게 부과시 "보증금"** 이라는 용어보다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례처럼 **"유상판매"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1회용컵의 재사용이 불가한 만큼 해외의 사례처럼 생산자(판매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부담금 형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유상판매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회수시 반환해주는 보** 중금제를 혼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플라스틱 재사용 활성화 품목)유통포장재 가이드라인 마련, 과대포장 규제 개선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8. 5.10.)의 주요과제이며, 이에 환경부는 제품 과대포장 방지와 유통포장재의 감량을 위한 대책('19.1.16.)을 추진하기로 함¹)
-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된 과대포장 인식조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8.9~)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함
- 중국에서는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공유 택배 상자를 제작하여 대대적으로 활용 할 계획**임
- 2016년 중국 택배 물동량은 312억 8000만 개로, 택배에 사용된 플라스틱은 82억 6800 만 개, 포장봉투 31억 500만 개, 포장박스 99억 2200만 개로 집계됨²⁾
- 전자유통업체 쑤닝이거우는 1,000번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공유 택배 상자(원가: 25위안)를 제작하여 컴퓨터 기기 가전제품 등 손상되기 쉬운 품목을 대상으로 사용을 확대할 예정임(20만개, 수취인이 택배를 수령 후 배달원이 바로 박스를 회수)3)

¹⁾ 환경부 보도자료('19.1.16.)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935250&menuId=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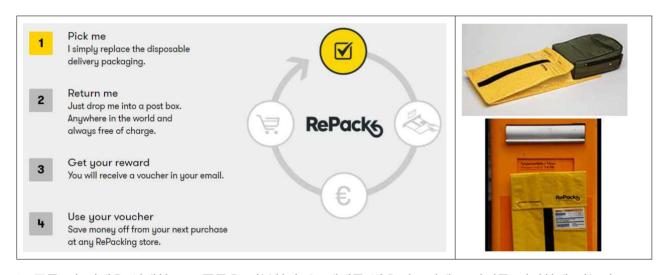
²⁾ 조선비즈(2017.11.22.) 택배 상자만 99억개…중국, 넘치는 택배 쓰레기에 친환경 '주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2459.html

³⁾ 조선비즈(2017.11.22.) 택배 상자만 99억개…중국, 넘치는 택배 쓰레기에 친환경 '주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2459.html



〈그림〉 쑤닝이거우의 공유 택배박스4)

- 핀란드 일부 유통회사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모델 구축**하 였으며, 페루스테(Peruste)사는 재사용 및 순환이 가능한 택배포장 서비스(리팩, RePack)를 개발하여 유영 중임
- Finnish RePack은 40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자 상거래 회사 및 상표에서 사용가능하여 소비자가 물건 구매시 RePack 포장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5)



- 1) 주문 시 리팩을 선택하고 보증금을 지불한다. 2) 택배를 받은 후, 리팩 포장지를 평평하게 접는다.
- 3) 우표없이 우편으로 발송한다. 4) 보증금은 온라인으로 환불받는다. 5) 발송된 리팩은 다시 사용된다. <그림> 핀란드 페루스테(Peruste)사의 리팩(RePack) 서비스⁶⁾

⁴⁾ 조선비즈(2017.11.22.) 택배 상자만 99억개…중국, 넘치는 택배 쓰레기에 친환경 '주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2459.html

⁵⁾ Pack Pedia(2017.11.16.) RePack 40 times reusable packaging

https://pack-pedia.com/2017/11/16/repack-40-times-reusable-packaging/

⁶⁾ 환경부 보도자료('19.1.16.)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935250&menuId=286

<u> 지정토론</u>

어<mark>용선</mark> 서울시 폐기물정책팀장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서울의 재사용 정책

어용선 서울특별시 폐기물정책팀장

최근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위협 등으로 전 지구적인 우선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작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작년 9월, 사용의 편리함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 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생산과 소비는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을 강화하는데 집중되어 재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원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재활용만큼이나 재사용에도 의미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 제도상에서 대표적으로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가 있는데요. 2016.6.15일 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캠페인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초창기 시민들의 재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뚝섬한강공원에서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재사용과 나눔문화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2012년 개장한 광화문장터는 도심 속 이색 7일장 풍경을 선사하며 시민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저렴하게 사고 파는 국내 최대의 시민장터로 거듭나 재사용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하였고, 일자리 창출 등 희망을 만드는 장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재사용문화를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전파하기 위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 아파트 공터, 공원, 주민센터 앞 등 생활주변 소규모 녹색장터('18년 기준, 340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지역주민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7년 9월 개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재사용을 넘어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거듭나는 새활용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재사용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다양한 사업개발 등을 통해 재사용이 시민들의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u> 지정토론</u>

정규호 한살림연합 정책기획본부장

한살림의 자원순환 실천 경험과 고민

정규호 한살림연합 정책기획본부장

1986년 문을 연 한살림은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핵심가치로 삼아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뜻 깊은 생활실천'을 위해 66만 도시 소비 조합원과 2천3백여 농촌 생산자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살림이 초창기 생활협동운동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소비자를 조직해나갈 때 생활 속 환경실천운동은 중요한 활동거리였습니다. 폐식용유를 모아 재생비누 만들기, 우유갑 모으기, 비닐봉투 안 쓰기와 장바구니 들기, 개인 컵과 손수건 사용하기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실천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했습니다. 90년대 초에 국내 최초로 폐식용유를 활용한 세탁용 가루비누를 개발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물살림 운동과, 우유갑을 재활용해 만든휴지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숲살림 운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도 경축순환(耕畜循環)에 기반 한 지역순환농업의 구상을 구체화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재사용운동과 관련해서도 한살림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1997년부터 20년 넘게 공급상자(종이), 보냉상자(스티로폼)의 재사용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1990년부터 시작한 병 재사용 운동의 경우 국내에서는 주류 회사를 제외하고 한살림이 유일하게 규모 있게 펼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옷 되살림 운동을 시작해 조합원으로부터 옷을 모아 파키스탄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국제교류와 자원순환 실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살림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작년 4월의 쓰레기 대란 사태는 한살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편리함'과 '세련됨'을 좇아 개발된 각종의 포장재들이 한살림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가공식품 비중이 늘고 농수축산물의 소포장 단위 품목이 증가와함께 선물 류, 생활용품 등의 포장이 고급화되면서 포장재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주요하게 취급하는 물품이 먹을거리(식품)이어서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도 결코 소홀히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느새 무감각해진 감수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전화해주었고, 자원순환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은 한살림이 지향하는 생명살림의 가치가 먹을거리라는 물품의 내용물에는 물론이고, 이제는 이것을 담는 용기와 포장재에도 반영되어야 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공간

(매장)에도 드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포장재 기준을 재정리하고,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포장재를 줄이는 차원에서 벌크매장(낱개판매 매장)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 23개 지역생협, 226개 매장 중 15지역, 28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고, 취급 품목도 감자, 양파, 고구마로 제한 적입니다만,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순환운동'을 2019년 한살림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서 전 조직이 함께 노력해가기로 했습니다. 각조직에서 참여하는 '자원순환운동회의'를 새로 만들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올 4월 달에는 '자원순환기획전'을 통해 자원순환 실천의 의미와 관련 물품을 조합원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죽임의 문명을 생명살림의 문명으로 바꿔내고자 한 〈한살림선언〉이 나온 지 30년 이 되는 해입니다. 그 〈한살림선언〉의 핵심을 요약한 '한살림운동의 지향'을 총회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함께 낭독하고 회의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합니다.
- 우리는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내 몸처럼 생각합니다.
- 우리는 지역의 이웃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는 우주 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지고자 합니다.
-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나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은 순환이고 순환이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순환형사회로 가는데 있어 정책과 제도개선, 개술개발 못지않게 생활양식 자체를 바꿔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에서 한살림과 같은 생활협동조합 영역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살림을 예로 들면, 지향하는 가치와 대중적인 조직기반은 물론이고, 생산과 유통, 소비영역을 함께 가지고 있어, 자원순환실천의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고 사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곳과 힘을 모아 자원순환 사회를 앞당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살림이 가진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병 재사용 운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병 재사용 운동은 1990년 유리병을 회수해 재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고 체계화 해 왔습니다. 2009년에 병 재사용 전용 규격병을 제작해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한살림 물류센터에 재사용병 세척시설을 갖추고 조합원이 재사용병 1개를 반납할 때마다 50원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마일리지 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한살림은 6종의 병 재사용 전용 병이 있으며, 30여 종의 물품을 전용 병에 담아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이것을 회수해서 세척시설을 거쳐 생산자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병 회

수율은 2016년 23.0%에서 2017년 27.0%, 2018년 31.5%로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리병 재사용운동 실적: 최근 3년간 연평균 12% 증가〉

구 분	2016년	2017	2018
공급량(개)	1,218,925	1,181,901	1,127,948
회수량(개)	280,945	319,053	355,271
회수율(%)	23.0	27.0	31.5
CO2감축량(톤)	84.2	95.6	106.6

한살림은 재사용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과 함께 '빈병 이어달리기 운동'도 하고 물류센터 재사용병 세척공장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병 용기를 재사용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의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재사용에 따른 용기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합원과 생산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한살림은 자체 힘으로 세척시설을만들고, 세척력을 높이면서도 환경에 덜 해로운 세제를 개발하고, 병에 붙이는 라벨지를 제거가 용이하도록 바꾸고, 재사용병의 파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수 시설을 마련하는 등 많은 난관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병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운동을 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성을 바탕으로 시스템 자체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화유리로 개선하고, 규격 병 제작(크기, 중량, 모양, 색상 등)을 통해 취급 품목을 확대하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세척 및 검수시설을 현대화 하고, 회수 시스템을 더욱 효율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살림을 포함해 병 재사용운동에 관심 있는 주체들이 함께 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개선에 정부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재사용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u> 지정토론</u>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법의 개정 방향 -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전담 변호사 김 지 은

2019. 03. 29.

2



1. 보증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1. 보증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Deposit Return Scheme)
- 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 법률에 명확히 근거 규정(문진국 2001584 개정안)
-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0조의 2, 제10조의 3 신설

제10조의2 (1회용 봉투·쇼핑백·컵·용기 판매대금의 용도) ① 제10조에 따라 1회용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컵·용기(이하 "1회용용기"라 한다)를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용기를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2. 고객이 장바구니, 다회용 컵 등을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 3. 잠바구니, 다회용 컵 등의 제작·보급 (추가 의견)
- 4. 1회용, 다회용 컵 회수 시스템 관리



1. 보증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나. 음료용기 보증금제

핀란드, 폐기물 법(Jätelaki, 2011/646)

제68조

음료 포장 반환 시스템 설정 및 가입 (PALPA)

음료 포장을 위한 보증금 기반 반환 시스템은 48 (1) 항에 의거 한 *음료 포장 반환 시스템을* 담당하는 생산자 또는 다른 음료 포장 제작자 또는 납세자와 단독으로 또는 소비세 의무법 (1037/2004)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료 포장 생산자 또는 납세자는 또한 회원을 포함하는 음료 포장 반환 시스템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음료수 포장 반환 시스템에서 활동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고 거래의 장벽과 경쟁 왜곡을 피하면서 생산자와 과세 대상 간에 균등하게 의무를 공유해야 합니다. 신입 회원은 환불 시스템의 다른 회원 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을 따라야합니다.

4



1. 보증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나. 음료용기 보증금제

<u> 핀란드, 음료 포장 반화 시스템에 관한 정부 법령 (</u>Government Decree on a return system for beverage containers, 2013/526)

Section 2 Amount of deposit

The minimum deposits on beverage containers included in the return system for beverage containers are:

- 1) EUR 0.15 for metal containers;
- 2) 2) EUR 0.20 for plastic containers larger than 0.35 litres but smaller than 1.0 litre;
- 3) 3) EUR 0.40 for plastic containers of at least 1 litre;
- 4) 4) EUR 0.10 for container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3



2.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용기 규격 통일

2.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용기 규격 통일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u>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u>재질·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u>따른 포장재의 재활용</u> <u>의무생산자</u>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본조신설 2013. 5. 22.] [제목개정 2018. 12. 24.]

[시행일: 2019. 12. 25.] 제9조의2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u>지정할 수 있으며</u>,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6



2.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용기 규격 통일

2.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용기 규격 통일

<u> 핀란드,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정부 법령</u> (Valtioneuvoston asetus pakkauksista ja pakkausjätteistä, 2014/518)

제4조

기본 포장 요건

시장에 출시 된 포장은 부속서 2에 명시된 포장의 제조, 구성, 재사용 및 회수 가능성에 대한 기본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포장이 유럽 의회의 일치된 표준 또는 지침 94/62/ EC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된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본 문서에서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이라고 하며, 본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표준 번호가 게시되어 있어야한다.



2.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용기 규격 통일

2.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용기 규격 통일

부속서 2

포장의 제조, 구성, 재활용 및 사용에 대한 기본 요건

1) 포장의 제조 및 구성 요건

교장은 크기와 무게를 최소한 당 수 있는 방법으로 교장해야 한다. 그러나 교장은 교장 된 제품과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수준의 안전성, 위생 및 수 용성음 보장 함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교장재는 재항용을 포함하여 재사용 또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조 및 판매되어야 하며 포장 폐기를 또는 취급으로 인한 잔류를 처리로 인한 환 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장재통 준비 함 때, 교장재 및 교장재에 유해 몸질 및 기타 유해 몸질이 존재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교장 폐기물의 교장 또는 폐기가 환경에 해를 끼 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물여야 한다.

2) 포장의 재사용성 요건

포장은 돌시에 다음 요건을 중축해야 한다.

- 포장의 물리적 특성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몇 차례의 운송 및 사용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사용 된 표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요건에 따라 취급 될 수 있다.
 표장재를 더 이상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용이 될 경우 표장재 회수 요건을 줄즉시켜야 한다.
- 3) 패키징 복구 요건
- a) 재활용 가능한 포장

교장재는 제4조 (기항에 언급 된 표준에 따라 판매됨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로 재황용됨 수 있는 재료의 특정 비용의 비용로 제조되어야 한다. 이 백분용은 교장이 이루어지는 재료의 유형에 따라 다른 수 있다.

b) 에너지 사용에 적한한 포장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교장 폐기물은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최소 발멸량을 가져야 한다.

(c) 뢰비 포장

회비화 됨 교장 폐기몸은 회비화 가능한 폐기몸, 회비화과정 또는 폐기용이 사용되는 장물의 분리된 수집을 순상시키지 않도록 중분히 생분하되어 야한다.

리) 생분해서 포장

생분해성 교장 폐기용은 용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열적으로 또는 생용학적으로 분해되어 최종 회비가 결국 이산화단스, 바이오 매스 및 몸로 분해되도 록 해야 한다.



3.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세 마련 or 음료용기 보증금제 강제

- 3.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세 마련 or 음료용기 보증금제 강제
- 현재 자원재활용법은 빈용기보증금제도 활용을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음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측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 함시킬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 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 1. 다음 각 목의 주류(濟類)
-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중류주류
- 2. 음료류
-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3.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세 마련 or 음료용기 보증금제 강제

- 3.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세 마련 or 음료용기 보증금제 강제
-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의 경우 알코올 음료와 청량 음료의 포장에 포장세가 부과된다. 일회용 포장의 사용과 폐기물 의 양을 줄이고, 쓰레기의 누적을 막기 위한 세금의 목적이다. 그 세금은 67센트/리터이다(현재는 51유로). 생산자 또는 수 입자가 포장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PALPA) 알코올 음료와 청량 음료는 보증금에 반하여 반환될 수 있으며 포장은 재충전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포장이 보증금에서 반환되어 원료로 사용된다면, 세금은 리터당 16센트다. 해당 업계는 보증금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998년에 핀란드에서 사용된 12억 개의 유리병 중 약 90%가 재충전되었다. (Economic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in Finland, 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2004)

10

D'LIGHT

3.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세 마련 or 음료용기 보증금제 강제

3.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세 마 련 or 음료용기 보증금제 강제

- 핀란드의 경우 음료용기 보증금제 (음료 포장 반환 시스템, DRS)와 포장 세(음료포장에 대한 소비세)는 함께 작동하는 제도 Figure 2: Schematic view of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n yellow) and policy-makers (in blue) in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strument (in red)

Timeline of key developments in the Finnish Deposit

Refund Systems (DRS) and Packaging Tax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4 2006 2010 2012

| Indication of the indi



3.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세 마련 or 음료용기 보증금제 강제

- 3. 보증금제도 장려를 위한 포장세 마련 or 음료용기 보증금제 강제
- 핀란드, 특정 음료 포장에 대한 소비세 의무법(Laki eräiden juomapakkausten valmisteverosta, 2004/1037)

제1조

적용범위

특정 음료 포장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

제5조

세금 금액

세금은 포장 된 제품 1 리터 당 51 유로다.

제6조

세금감면

비과세:

1) 음료 포장, 포장이 제3조 2)함에 언급된 유효 반품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

1



4. EPR 제도 개선

4. EPR 제도 개선

가. 재사용 목표제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PPWD) 개정안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5 % (2025 년까지) 및 10 %
 (2030 년까지)의 새로운 재사용 목표 (구속력 없음)를 요구하고 있음
- 나. 재사용 장려를 위한 수수료 차별화
- 기술적인 고려 후 도입 논의





<u> 지정토론</u>

배선영 녹색연합 활동가

새로운 쓰레기 정책이 필요하다! 쓰레기 제로 사회를 위한 재사용(Reuse) 정책 강화 제안

배선영 녹색연합 전환사회팀 활동가

1. 들어가며

지난 폐기물 대란 이후 플라스틱 과대포장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쓰레기 제로, 일명 제로웨이스트(Zero-waste)를 실천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상에서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시민들은 이미 상상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한 번 장을 보면 수십 개씩 쏟아지는 포장 쓰레기를 거부하는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 활동을 비롯해 빨대 거절하기, 비닐봉지/비닐 랩 안 쓰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등 직접적인 실천을 전개하는 시민과 커뮤니티가 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재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근본적인 진단이 제로웨이스트 또는 플라스틱 프리(Plastic Free) 캠페인을 지속하는 이유입니다. 녹색연합은 2017년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을 모집해 〈쓰레기 탐사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탐사대가 각종 쓰레기 처리 시설을 방문하고 내린 결론은 '재활용은 모범답안이 아니다' 입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동 환경 문제, 최근 수면위로 드러난 국내 불법 폐기물 처리 현황 등 다양한 현상으로 가시화되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원천 감량'입니다. 이에 따라 '재사용(Reuse)'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위상을 높이며 시민이 실천할수 있는 다양한 재사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황

2018년 폐비닐 대란 이후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재활용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재사용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2조 6호에서 재사용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기 위한 재사용 방안은 미비한 수준이고, 시민들이 그나마 체감할 수 있는 제도는 '빈용기보증금'제도 뿐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에 대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되었습니다. 자원순환정책 추진 방향과 생산-소비-관리-재생 단계별 세부 과제 수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계획 등이 포함된 이 기본계획에서 '재사용'에 대해 언급된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문별 자원순환 정책 추진 경과 및 한계점

- ▷ 감량(Reduce), 재사용(Reuse) 정책은 주로 1회용품 사용규제, 과대포장 규제, 쓰레기 종량제,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빈용기보증금 등이 해당되는데
- ▷ 생산 단계에 있어서는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감량 계획을 수립하는 감량화 제도 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은 미흡하였고,
- ▷ 소비 단계에서도 '03년 도입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08년 폐지되는 등 정책적 우 선순위가 일부 후퇴한 측면이 있다.

2) 국내 자원순환 여건

- 인구•가구 수는 지속 증가하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정체 추세일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인구•1인가구 증가 등으로 분리배출은 약화되고, 새로 운 폐기물 배출원 등장을 예상한다.
- ▷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자원순환 여건 변화를 전망하면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포장폐 기물 발생 증가 등이 예상되며 포장폐기물 회수 체계 및 제품 재사용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3) 자원순환 정책 추진 방향

- ▷ '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재활용-안전처리' 등 우선순위를 명확화하여 생산•소비 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제품의 재사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의 근원적 발생 저감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다.
- ▷ 폐기물 발생 이후의 사후적인 처리 대신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원순환성 개선을 추진한다.

4) 단계별 세부 과제

가. 소비단계

- ▷ 재사용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재활용 방법임에도 불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일부 지자체의 나눔장터 운영 등에 국한되어 있다.
- ▷ 향후 순환자원정보센터-재활용센터•나눔장터•상설매장 등을 연계하여 '재사용 네트 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을 하고,
- ▷ 지역별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다빈도 생활용품 대여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순환형 친환경서비스를 발굴•확대하며

▷ 지역 주민들의 중고물품을 기증받아 렌탈•리스 등 재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나. 관리단계

- ▷ 재사용과 연계된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과 폐기물 재사용 촉진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 을 위해
- ▷ 빈용기보증금 적용 대상 지속적 확대 검토 및 회수용 박스 보급, 무인회수체계 전국 확산 등 소비자 반환 편의성을 제고하고,
- ▷ 폐가전, 폐의류 등 재사용 가능 제품은 별도 수거체계 구축 및 재사용매장 등 수요처 연계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홍수열 소장님의 발제를 통해 확인했듯이, '재사용'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다시 쓰거나 나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생산단 계에서의 재사용, 유통 매장과 소비자가 주도해 일회용 포장재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소비단계의 재사용 등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순환기본계획'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사용 개념은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시민•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촘촘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3. 제안

1) 포장 용기의 실질적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소분 구매 가능한 시스템 도입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제류는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재사용하기 위해 '리필용' 세제를 판매하는데, 이 리필용기도 필름류로 생산되어 사실상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 만드는 꼴입니다. 재사용의 본질적인 의미에 위배되는 포장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하는 케첩이나 마요네즈 같은 포장 용기는 개선이 절실합니다. 내용물을 전부 비우고 깨끗이 세척해 버리기 어렵고, 이물질이 묻어 있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할지,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버려진 용기가 현 시스템에서 제대로 재활용될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 용기가 아닌 다른 재질(유리 등)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소량 구매에 대한 욕구는 느는데, 소비자가 소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한정적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매장에서라도 다양한 품목을 포장 없이 구매할수 있는 벌크 판매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여야 합니다. 앞서 발제와 토론에서 소개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협동조합의 연합을 통해 재사용 병 회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살림을 비롯한 생활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선도적으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운송용 포장재 재사용 방안 및 배달 포장재 저감 대책 마련

정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유통 포장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실태를 진단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시장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매년 10%이상 증가하는 등 수송 목적 포장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일회용 포장재 폐기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대 포장을 방지하고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파손방지를 위한 완충재 일명 뽁뽁이를 친환경 종이 포장재로,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은 물로채워진 아이스팩으로 대체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지만, 이를 재사용할 방안이 없어 일회용으로 폐기된다면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략할 것입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배달시장에서 사용되는 포장재 저감 대책도 시급합니다. 과거 배달 음식을 다회용 용기에 담아 제공한 후 회수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음식 배달 중계 서비스의 도입으로 거의 폐지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과대 포장과 일회용 식기 및 물티슈 같은 일회용품 서비스 과잉은 플라스틱 폐기량을 증가시킴은 물론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용기는 분리배출이 되더라도 잔재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실질 재활용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방향과 상반되므로 환경부를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나가며

생활 속 불편한 실천을 지속하고 있는 시민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신기후체제를 살아가는 지구인으로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고 현실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안된 내용들이 현실에 밀착한 '쓰레기 정책'으로 반영되고 재사용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사)녹색연합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성북동) tel 02-747-8500 / fax 02-766-4180